

허가번호 제 종재-64호

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

상 호 (명 칭)	세이프티넷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894-79-00468
성 명 (대표자)	임 형 태 (1972.01.09.)		
주 소 (사무실)	경남 양산시 상북면 울리길 47-22	(☎ 0507-0178-5300)	
전문처리 분야	폐기물종합재활용업(R-3-4)		
영업대상 폐기물	지정의 사업장일반폐기물 [폐분말소화기(51-40-01), 폐소화기류(91-19-00, 분말형)]		
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	경남 양산시 상북면 울리길 47-22		
시 설 ·장 비	“별첨” 참조		
기 술 능 력	기술요원 임명 임형태(법정교육 1회/년 대상)		
허용 보관량	“별첨” 참조		
허 가 조 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폐기물관리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위탁받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위탁할 수 없음.2. 허가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.3.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에서 제시한 보관 형태대로 보관하여야 하며, 보관형태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에 따른 산출기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4.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은 설치장소 이외의 곳에 설치 될 수 없으며, 사업장 내에서 임의 이동할 수 없음.5. R-3-4 유형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된 원료물질(재생 소화약제)은 제품(소화기)의 제조를 위한 용도로 한정하되, 별도의 추가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며,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밖에 해당 원료물질(재생 소화약제)을 관리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 또는 규격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함6.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은 처리 할 수 없으며, 타법에 관련된 사항은 그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함.7.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물질(대기, 폐수, 악취 등)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4에 따라 오염예방, 저감방법 및 배출허용 기준 등을 준수토록 함8. 상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.		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허가합니다.			
2024년 08월 21일			
양 산 시 장			



<변경사항>

일 자	내 용	확 인
2024.08.21.	○ 최초허가	이 화 정
2024.09.02.	○ 사용개시(※ '24. 8. 21. 최초허가 건)	이 화 정
2024.10.22.	○ 변경허가(증차 1대, 86조3897 포터 II)	이 화 정

<행정처분사항>

일련번호	일 자	위 반 내 용	일 자	처 분 내 용

<적합성확인 사항>

연 월 일	내 용	확 인

- **인계인수** : 폐기물을 운반 재활용하는 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**올바로시스템**에 입력해야 하고, 폐기물을 처리한 후 처리사항을 2일이내에 입력하여야 함.
- **실적보고** : 매년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**올바로시스템**으로 보고 해야 함
- **대장작성** : 1.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탁재활용 대장(반드시 **올바로 시스템(www.allbaro.or.kr)** 이용)작성
2.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 2서식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작성(3년간 보존)
- **적합성 확인** :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라 최초허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함.
- **유해특성확인**(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, 환경부고시 제2016-182호, 2016-146호)
: 폐기물별 유해특성 확인대상 업종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재활용 할 경우 재활용 전에 유해특성 확인하여야 함.

※ 인계인수, 실적보고, 대장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임.

<시설·장비 및 허용보관량>

□ 영업대상 폐기물

- 사업장일반폐기물 [폐분말소화기, 51-40-01, 91-19-00]
- 재활용 유형 [R-3-4]
 - 분리, 선별, 압축, 감용, 절단, 파쇄, 분쇄, 용융, 반응, 증발·농축, 증류,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, 금속, 유리, 합성수지, 섬유, 고무,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

□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부대시설

시설·장비명	규격 (능력)	방 지 시 설 명
폐기물 재활용시설	• 선별시설 1.5kw×1 (처리능력 0.76톤/시)	여과집진기 25㎡/분×1
부대시설	• 포집(흡입)시설 7.5㎡×1기 - 방사구(2개), 흡입구(4개)	여과집진시설 25㎡/분×1
	• 소화기 캡 분리기(2개)	
	• 이송스크류컨베어 2기(밀폐형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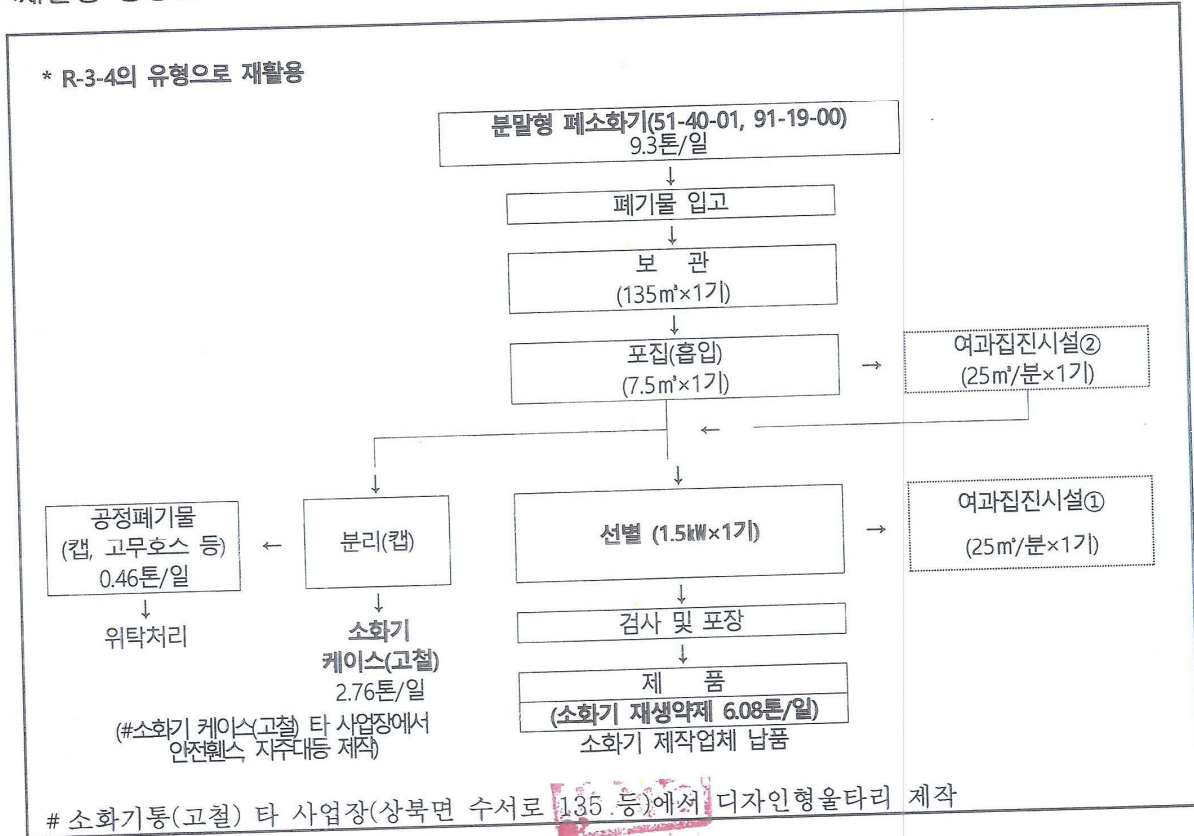
□ 보관시설 : 옥내 톤백보관

- 규 격 : 5m(W)×9m(L)×3m(H)= 135㎡
- 허용보관량 : 168.75톤 (비중: 1.25)
- 보 관 기 간 : 27.7일 (1일 처리능력: 6.08톤/일)

※선별 포장(톤백) 한 재생소화약제, 선별 소화기케이스(고철), 공경이물질(캡, 고무호스등) 옥내보관

- 수집·운반차량 : 83가6459(봉고III 1톤), 2024-177
86조3897(포터II 1톤), 2024-230

<재활용 공정도>



※가동시간 및 가동일수 : 8시간/일, 300일/년

<재활용 공정도 설명>

공정명	공정 설명	비고
폐기물 입고	폐기물인 폐소화기를 톤백에 담아 사업장에 입고함.	
보관	입고된 폐기물을 옥내 보관시설(135m²)에 보관함.	보관 시설
포집 (흡입)	-포집(흡입)시설에 폐소화기통 내부의 분말(약제)을 방사 -약제를 방사한 폐소화기통에서 손잡이(캡) 분리 -손잡이(캡) 분리시킨 폐소화기통 내 잔량 분말(약제) 흡입	부대 시설
선별	포집된 소화기 분말 중 이물질질을 선별함.	재활용 시설
검사 및 포장	소화기 재생약제를 육안검사 후 수동으로 포장함.	
제품 출고	제품(재생 소화약제)을 각 수요처에 출고함.	

<사업장 및 처리시설 배치도> 상북면 율리길 47-22

